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. 3. 23 선고 2022가단10912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3. 9.

판 결 선 고 2023. 3. 23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6 지분에 대하여 2016. 5. 23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취고하고,
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6 지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
2019. 8. 13. 접수 제316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447861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.

9. 30. 위 법원으로부터 ‘D는 원고에게 3,530,641원 및 그 중 2,574,386원에 대하여 2013. 6.

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.67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판결을 선고받았다.

나. D의 부 E(이하 ‘망인이라 한다’)는 2016. 5. 23. 사망하였다.

다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는 위 망인이 소유하던 상속재산이었는데,
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8. 13.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

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, 4,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

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

행사하여야 한다(민법 제406조 제2항).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

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

판정하여야 할 것이고,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

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(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다73138, 73145 판결 등

참조)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

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(대법원 2002. 11. 8.

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).

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

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망인의 사망시점인 2016. 5. 23. 무렵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, 2022. 12.

8.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관련 검토를 명하였음에도 원고는 별다른

추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내

제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윤동현

별지